

[     ] 석재채취업  
[     ] 석재가공업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일  |
| 신청인  | 상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 |      |
|      | 성명(대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사무소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신청업종      [ ] 건축용    [ ] 공예용    [ ] 조경용    [ ] 토목용(석재채취업의 경우만 해당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| 등록 신청 이전의 석재채취업·석제가공업 등록현황<br>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등록번호: )</div>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     ] 석재채취업, [     ] 석재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

이  
이  
이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인<br>제출서류    |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| 수수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<br>2. 공장등록증명서(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) | 없음 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 
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 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면심사 → 실제확인 → 등록증 발급

신청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